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2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10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엄혜숙)

가. 제안이유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를 삭제하고,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변경함. (안 제1조)
-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「지역보건법」에 맞게 정비함.
(안 제2조, 안 제3조)
-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준용하도록 함. 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민기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규정 되어있는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,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- 안 제1조에서는 「지역보건법」이 전부 개정(2015.5.18)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·징수 근거조항이 법 제26조제2항에서 법 제34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,
-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「지역보건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음.
- 안 제4조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준용하도록 함.
- 아울러,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, 불복, 강제징수 등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법 체계를 9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음.
- 이는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,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었고, 이를 규정하는 경우 해석상의 혼란만 초래할 것인바,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입법사례로 보이며,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규정 등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6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를 삭제하고,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근거 조항을 정비함(안 제1조)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

나.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비함(안 제2조)

-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와 제29조를 위반한 자

다.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함(안 제3조 별표)

-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 와 제29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1차~3차 위반에 따른 적정한 과태료를 규정함

라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대해서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역보건법」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의사항

○ 규제심사 : 심사실시(대상사무 없음)

○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원안동의)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원안동의)

라. 기타사항

○ 입법예고(2016.05.26.~ 06.15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태료의 부과대상)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
2.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

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준용)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(단위 : 만원)

근거법령	위 반 사 항	위반횟수별 부과금액		
		1차	2차	3차
법 제34조제1항제1호	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	100	200	300
법 제34조제1항제2호	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	100	200	300